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 》

■ 염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14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열태영의원 대표발의(제2211314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발주자에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 (안 제45조제3항 신설)	2

I. 염태영의원 대표발의(제2211314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염태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7. 7.

다. 회 부 일 : 2025. 7. 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산정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별도로 부과하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이 있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과소한 공사비 산정이 빈번하여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적정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최소한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 신설).

3. 검토의견

가.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안 제4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① · ② (생략) <u><신설></u> ③	제45조(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공사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은 발주자¹⁾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1) ‘발주자’의 개념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은 ‘발주청’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수 있도록 공사비 산정기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공사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45조²⁾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³⁾은 한국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

2) 「건설기술 진흥법」

- 제45조(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⑤ 제5편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토목공사(건설기계·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및 건설신기술 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건설기술연구원을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제·개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⁴⁾ 관리기관의 심의안 제출과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⁵⁾의 심의 등 절차⁶⁾를 거쳐 확정된

※ 제5편 공사비산정기준의 관리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표준시장단가의 관리 제3장 표준품셈의 관리
제4장 신기술품셈의 관리 제5장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4)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82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대한 관리기관(이하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1.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제·개정
2.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연구, 조사, 해석 및 보급
3.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데이터베이스 구축
4.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민원 처리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5. 건설신기술 공사비기준 조사 및 검토(일반건설, 스마트건설)
6. 스마트건설 마당 신청 기술 공사비 검토
7. 스마트건설 공사비 산정기준 제·개정(건설자동화, 모듈러, BIM 단가 등)
8. 노후인프라 성능개선 원가기준 제·개정
9. 설계용역 대가 선진화 조사 및 연구

③ 공사비산정 관리기관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독립된 기구(공사비평가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 관련업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5)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97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제·개정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 위원회(이하 "공사비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6)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88조(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확정 등)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이하 "표준시장단가"라 한다)에 대한 심의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된 표준시장단가 심의안을 제9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산정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제출된 표준시장단가 심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표준시장단가를 확정한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표준시장단가를 1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3조(표준품셈의 확정)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표준품셈 제·개정에 대한 심의안(이하 "표준품셈 심의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사비 산정기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⁷⁾

그런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⁸⁾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과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표준품셈 심의안을 제97조 제1항에 따른 공사비산정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사비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제출된 표준품셈 심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표준품셈을 확정한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표준품셈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4조(신기술 원가계산서 검토 및 품셈안 작성) ①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건설신기술 지정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하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4조에 의한 신기술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원가계산서와 별지 제23호 서식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서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1차 검토결과를 30일 이내에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의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1차 심사가 통과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 및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일정 등을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건설신기술품셈안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건설신기술 현장실사에 참석하여 신기술원가계산서 및 건설신기술품셈안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

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⑥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에 대한 건설신기술품셈안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 전까지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건설신기술품셈의 확정) ①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2차 심사가 통과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 지정·고시전까지 건설신기술품셈을 확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신기술 지정·고시 후 15일 이내에 건설신기술품셈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의 제·개정 시 보호기간 내 건설신기술품셈의 개정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7)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81조(공사비산정기준의 활용) 이 규정에 의해 제정되는 공사비산정기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8) 홍성호·조재용, "건설공사 표준 일위대가의 타당성 검토 연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정책리뷰 2019-02, 2019.8.

관련하여 표준품셈에 따른 투입자원 구성 및 수량에 대한 임의 조정, 비현실적인 단가 적용, 수량 또는 단위의 입력 오류, 과거의 시중노임 적용 등으로 공사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45조의2⁹⁾는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에서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

제1항에서는 ‘발주자’에게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9)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제1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건설공사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련 규정 비교】

구 분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현행법 제45조)	공사기간 산정기준 (현행법 제45조의2)
발주자의 의무	<개정안 제45조제3항 신설> ○ 발주자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u>공사비 산정기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 여건, 공사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사비를 산정</u>하여야 함.	-현행법 제45조의2제1항- ○ 발주자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u>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u>하여야 함. -다만, 불가항력 등 <u>정당한 사유가 발생한</u>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u>적정 공사기간 조정</u>을 검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적정한 공사비 또는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기준	-현행법 제45조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 및 표준 품셈 등 <u>공사비 산정기준을 정</u>할 수 있음.	-현행법 제45조의2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이 제1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u>할 수 있음.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련 조사·연구 또는 자료 요청 등	-현행법 제45조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음.	-현행법 제45조의2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현행법 제45조제3항- -제2항 후단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자료: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 제45조의2 및 개정안 조문 요약

개정안은 현행법 제45조의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과 관련해서도, 현행법 제45조의2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과 유사하게 ‘발주자’가 공사비 산정기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공사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함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부적정한 공사비 산정은 실제 건설공사에서 공사비 부족으로 무리한 공기 단축, 인력 투입 축소 및 산업안전 소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건축물 및 시설물의 품질 저하와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등을 초래할 수 있는바,¹⁰⁾

건설공사의 공사비에 대해서도 공사기간 산정과 관련된 현행법의 입법례와 유사하게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용 산정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의 다음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설공사는 사적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공공 건설공사와 달리 다양한 계약 형태가 존재할 수 있어, 개정안과 같이 안 제45조제3항을 신설하여 민간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까지 현행법 제45조제1항¹¹⁾에 따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을 고려한

10) 심규범, “産災 저감 -‘제 살 깎기 경쟁’ 억제 통한 적정 공사비 확보가 관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ERIK 저널 통권 제208호, 2013, pp.21-23. 참고

적정한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건설공사의 모든 주체에게 건설안전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이 강조되고 안전과 관련된 비용이 투자되어 적정한 공사비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안”에서 민간과 공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¹²⁾¹³⁾

11)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12)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 규정을 살펴보면, 적정한 공사기간 산정 의무는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 부여하나(제1항), 세부 산정기준은 공공분야에 한정하여 제시(제2항 및 제3항)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과 관련된 규정이며, 개정안에 따라 안 제45조제3항을 신설하여 민간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도 적정한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할 경우, 공공 건설공사와 달리 사적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민간 건설공사의 특성상 발주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계약 형태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인 현행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이 민간공사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다만,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정한 공사비 반영이라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며, 건설공사의 모든 주체에게 건설안전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이 강조되고 안전과 관련된 비용이 투자되어 적정한 공사비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안”에서 민간과 공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논의될 필요가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3) “건설안전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151호, 2025.6.27.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제8조(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 등) ① 발주자는 설계자등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연면적이 3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중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관련한 검토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을 시공자에게 확인시킨 후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책무를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및 민간 공사에 대하여는 설계, 인·허가, 공사계약 등의 단계별로 적정 공사비 반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국건설경영협회는 적정한 공사비 지급 원칙의 확립을 위하여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명문화하는 입법이 조속히 실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1.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심의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 허가, 승인, 신고 수리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
 -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을 검토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심의 또는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설계자등에게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160호, 2025.9.22.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 제8조(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및 비용 제공 의무 등) ① 발주자는 설계자·시공자등·감리자(이하 “설계자등”이라 한다)가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감리·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중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관련한 검토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심의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 허가, 승인, 신고 수리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검토
 -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심의 또는 검토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의2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이때, 제2항 각 호의 기관은 발주자 또는 설계자에게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심의 또는 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설계자등에게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제2항제1호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하여 공사에 필요한 예산 소요 등(「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조정,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등을 포함한다)을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591